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1. 11. 2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 11. 26

다. 상정일자 : 제11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8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법률 제6158호(2000.1.27)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대통령 제17109(2001.1.27) 같은법률시행령이, 보건복지부령 제190호(2001.3.24)로 같은법률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률등을 이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근거법률을 현행법률과 맞게 개정함.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장기간을 15년씩 3회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문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 1. 27 대통령령 제17109호로 전문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1. 3. 24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전문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거 조례의 법률근거와 묘지의 사용기간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